

# 대학원 체육학과 운영 내규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체육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체육학과 소속 교수들은 체육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 제4조 (교육과정)

1) 박사과정의 경우, 매학기 취득 학점 중 2/3 이상을 자기 전공 분야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 제5조 (과목개설)

### 제6조 (교·강사 배정)

## 제4장 논문지도

###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 제5장 자격시험

###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 1)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 2) 타 대학원에서 종합시험을 치루고 편입한 원생의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 3) 박사과정 원생의 경우 예비발표 발표기준점수 30점이상 취득시 종합학력시험 1과목을 면제한다.

###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 1) 석사과정은 수강하였던 수업 교과목 중 2과목, 박사과정은 수강하였던 수업 교과목 중 4과목을 시행하며, 필기시험으로만 시행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응시과목의 합격점수는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 3) 종합학력시험의 채점은 해당 교과목을 출제한 교강사가 채점한다.
- 4)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시험을 실시한다.

###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자격시험의 과목과 면제 기준은 일반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에 준한다.

##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대학원 체육학과에서는 석사과정의 학위취득을 논문제출로만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함

##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함

제14조 (예비발표)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수료이후 예비발표를 신청할 수 있음. 박사과정은 체육학과 예비발표 발표기준점수 250점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300점 이상을 취득해야 예비발표 신청이 가능함(단 외국인 박사과정 원생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

### 1. 학술지 게재

#### 1) 국내 학술지

##### (1) 등재지 : 150점

- 단독(지도교수는 연구자에서 제외됨) : 150점
- 2인 이상(지도교수는 연구자에서 제외됨)
  - ▶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 \times 2$
  - ▶ 공동연구(참여) :  $\{1/(n+1)\}$

따라서, 지도교수 제외한 연구자가 총 3인일 경우 1인당 점수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 75점, 참여저자의 경우 37.5점임.

##### (2) 등재후보지 : 100점

- 점수 환산은 등재지와 같은 방법을 적용함.

##### (3) 스포츠과학연구소(천안캠퍼스) and 교과교육연구(죽전캠퍼스) : 100점

- 점수 환산은 등재지와 같은 방법을 적용함.
- 1회에 한해서 인정함.

#### 2) 국제 학술지

-점수 환산은 국내학술지의 등재지와 같은 방법을 적용함

(1) SSCI 등재 학술지 : 450점

(2) SCI, SCIE 등재학술지 : 300점

(3) SCOPUS 등재학술지 : 200점

### 2. 세미나 발표

※ 학위 논문계획서 제출 전까지 교내 세미나에서 의무적으로 1회 이상 발표해야함.

※ 세미나 발표를 통한 총 취득 점수는 최대 100점 까지만 인정함.

1) 교내 세미나

- 1회당 30점.
- 세미나 자료만 제출하고 미발표시 점수 불인정.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이중 발표 불가.

2) 교외 세미나

- 1회당 50점.

6) 저서

- 1회만 인정하며 페이지수와 관계없이 30점 인정.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석사과정은 내부교원 3명, 박사과정은 내부교원 3명, 외부심사위원 2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함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함

##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